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381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학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2. 2.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2. 3. 28. 접수 제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전11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792,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1. 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9. 24. 확정되었는바, 2022. 6. 24. 기준 위 채권원리금은 합계 15,835,455원(= 원금 3,792,463원 + 지연이자 12,042,992원)이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D가 2022. 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E, F, G가 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22. 2. 15.경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8.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로부터 2021.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C의 재산상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C과의 관계와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 C은 말기 간암 환자로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도 없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처분하여 청산할 재산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2. 3. 28. 접수 제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